

붙임 1. 취소 전 청문 대상(공시송달, 4개사)

번호	기업명	인정번호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법적근거
1	알에스파트너스	2025151533	창업3년 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(2026년 6월 만료)	인정취소	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
2	(주)탄탄카본텍	2024111651	창업3년 이내 소기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적요건 미달(2026년 4월 만료)	인정취소	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
3	(주)소프스톤	2021116439	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음	인정취소	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
4	(주)제이엠바이오	2023155610	변경신고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음	인정취소	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6호

세상을 바꾸는 기술! 미래를 여는 K-Tech!
대한민국은 기술개발인이 만들어 갑니다

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수신자 대표이사(기업부설연구소장/연구개발전담부서장)
(경유)

제 목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취소 전 10월 청문 안내

1. 귀사의 연구소/전담부서는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취소 절차(청문)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. 인정취소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(아래 방법① 또는 ②)를 이행 바라며, 미 조치 또는 청문 미소명시 귀사의 연구소/전담부서는 최종 인정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기업부설연구소등의 취소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(인정번호:)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		
인정취소 원인해소를 위한 조치 방법 (택 1)	구분	조치방법		
	방법① (권장)	온라인 변경신고 제출(www.RND.or.kr)		
	방법②	변경신고 외 별도 소명 필요시 서면 제출 및 청문 참석 * 청문 참석은 하기 청문실시 일정 참고 바랍니다.		
	※ 주의: 제출한 변경신고가 처리완료(승인)되거나 별도 소명 내용이 없는 경우, 청문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			
당사자	기업명			
	주 소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 호			
청문실시	기관명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	부서명	연구소관리팀
	주소	서울시 서초구 바우뚝로37길 37 2층 중회의실		
	일시	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4:00	장소	산기협회관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팀장
성 명		윤영근		
취소예정일	2026. 11. 13(금)			

3. 유의사항

○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거나 2026. 10. 26(월)까지 변경신고 혹은 사전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26. 11. 13(금)부로 인정이 취소됩니다.

○ 정당한 사유로 청문 참석이나 의견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, 반드시 2026. 10. 26(월)까지 본회에 해당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청문 결과에 대한 정정 요구 기간: 2026. 10. 28(수) ~ 11. 6(금)

4. 문의처

○ 변경신고 제출 관련: 연구소운영팀 (국번 없이 1379)

○ 청문회 참석 관련: 연구소관리팀 (02-3460-9150, 9144, 9146)

한국 산업 기술 진흥 협회



사원

박선영

팀장

전결 06/25

주범식

협조자

시행 연구소관리팀-523 (2026.06.25.) 접수 ()
우 / http://www.koita.or.kr
전화 02-3460-9150 전송 02-3460-9019 sy1@koita.or.kr / 공개
"Technology Innovation Network Hub"

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 및 10월 청문참여 안내

1.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 방법

취소에정일 이전에 **변경신고를 완료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해소한 경우, 청문참여가 불필요** 합니다.

변경신고는 연구소신고관리시스템(www.RND.or.kr)에서 진행 바랍니다.

○ 벤처기업 유효기간 만료

- ① 벤처기한이 연장된 경우: 기한 연장된 벤처기업확인서 첨부하여 변경신고
- ② 벤처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(**변경신고기한 내 벤처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**)
 - 중소기업확인서 첨부하여 중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신고 및 연구전담요원 충원
(중기업: 5명이상, 소기업: 3명이상,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: 2명이상)
 - 보완명령 연장신청(rnd.or.kr → [마이페이지] → [보완명령 연장신청])
- ③ 위와 같이 ①,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
 - 자진취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규 설립

○ 창업3년 소기업 '연구소' 유효기간 만료

- ① 변경신고: 대표이사 전담요원 제외 및 연구전담요원 추가 배치(벤처: 2명이상, 소기업: 3명이상, 중기업: 5명이상)
- ② 보완명령 연장신청(rnd.or.kr → [마이페이지] → [보완명령 연장신청])
- ③ 자진취소: ①,②의 요건 미충족시 연구소 자진취소 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규설립

○ 창업3년 소기업 '전담부서' 유효기간 만료

- ① 변경신고: 대표이사 전담요원 제외 및 연구전담요원 추가 등록 후 변경신고
(연구전담요원 1명이상)
- ② 보완명령 연장신청(rnd.or.kr → [마이페이지] → [보완명령 연장신청])
- ③ 자진취소: ①,②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 자진취소

○ 현장조사(서면확인) 시 보완명령 결과를 받은 기업

- ① 수령한 현장조사(서면확인) 보고서 상의 조치사항을 보완하여 변경신고
- ② 보완명령 연장신청(rnd.or.kr → [마이페이지] → [보완명령 연장신청])

○ 현장조사(서면확인) 시 직권취소/허위취소 결과를 받은 기업

소명할 내용이 있을 시, 청문 참석 (청문 불참 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이 확정)

○ 현장조사시 추적불가 결과를 받은 기업

이전한 주소 및 담당자, 인력현황 등을 업데이트하여 변경신고

2. 청문참여 안내

□ 사전의견 제출을 통한 청문참여 안내

- 기한 내 변경신고 처리완료 시, 사전의견 제출 및 청문참여 불필요
- 사전의견 제출과 청문 참여는 동일한 효력을 지님
- 사전의견 제출서류

가. 공문(자사양식) : “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”에 대한 의견내용 등을 기재

나. 위 공문에 기재한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 등(자유양식)

다. 제출기한 : 청문일자 전(10/26(월))까지 제출가능

라. 제출방법 : 이메일(sy1@koita.or.kr, kbb@koita.or.kr)

□ 청문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

○ 청문참여 방법

- ① 소명할 사실에 대한 사전의견 제출서류(공문, 증빙자료)를 청문 전 본회에 제출
- ② 직접 참석

※ 청문에 직접 참석할 의사가 있는 경우, 본회로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- 청문에 직접 참석할 경우, 사전의견 제출과 마찬가지로 공문 및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소명할 사실에 대해 진술해야 합니다.

- 청문참여를 통해 “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”에 대한 소명 또는 “법적근거”가 변경 되지 않는 경우, 청문 이후 안내된 “처분하고자 하는 내용”은 확정됩니다. 사전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불참할 경우의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.

※ 사전의견서 및 증빙자료에 따라 “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”, “법적근거”에 대한 소명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. 청문시 기업 내부사정 등(예: 단순 실수, 인수인계 부족, 신고하지 않은 대체인력 존재 등)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진술은 고려되지 않습니다.